◉ 산업통상부 공고 제2026-685호

「도시가스요금 경감지원금액 한도 산정 등에 관한 지침」을 개정함에 있어,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「행정절차법」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6년 11월 6일

산업통상부장관

「도시가스요금 경감지원금액 한도 산정 등에 관한 지침 」 일부개정고시(안) 행정예고

1. 개정이유

취약계층의 실제 거주지와 주민등록지가 다른 경우 도시가스요금 경감 적용에 어려움이 있어, 실제 거주지에서도 요금경감을 신청할 수 있도록 신청 절차를 개선하려는 것임

2. 주요내용

가. 가스도매사업자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도시가스요금 경감을 대신하여 신청하는 경우 주민등록지와 다른 실제 거주지에도 도시가스요금 경감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(안 제3조제1항제4호)

나. 동절기 취약계층의 난방비 부담 완화를 위해 한시적으로 확대했던 도시가스요금 경감지원금액 한도의 적용기간을 2027년 11월 30일까지로 연장함(부칙)

3. 의견제출

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·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6년 11월 26일(목)까지 산업통상부장관(참조 : 가스산업과 / 주소 :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종합청사 산업통상부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·반여부와 그 이유)

개 정(안)	수 정(안)	수 정 사 유

나. 성명(법인·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
다. 의견제출 방법 : 우편 또는 전자우편, 전자공청회

1) 주소 :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종합청사 산업통상부

2) 전자우편(이메일) : yrk99@korea.kr

3) 전자공청회 : 국민신문고(http://www.epople.go.kr)

라.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부 가스산업과(전화 : (044) 203 - 5236)로 문의하여 주시고, 행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산업통상부 홈페이지(http://www.motir.go.kr → 예산·법령→ 입법·행정예고 → 행정예고)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